



## 부부공동명의 변경 진행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중흥S-클래스 힐더포레’ 아파트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며,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 하에 전매제한기간에도 증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중도금 대출 이전 부부공동명의 변경을 희망하시는 계약자께서는 **부부공동명의 진행절차 및 구비서류 반드시 확인하신 후 해당 지정기간 내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부부공동명의 변경(전매) 절차 안내

절차	장소	구비서류 등
① 증여계약 체결	① 증여계약서 : 직접작성	* 양도인(계약자), 양수인(배우자) 간의 증여계약서 작성 (구리시청 서식 및 작성방법 확인, 지분표시 必)
② 증여계약 검인	②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031-550-2154)	* 토지정보과에서 증여계약서 검인도장 득 * 대상자 : 양도인 및 양수인 * 구비서류 : 신분증, 인감도장, 증여계약서, 분양계약서(아파트, 발코니확장)
③ 부부공동명의 변경 신청(동의서 작성등)	③ 견본주택 방문(1차)	* 신청자 : 양도인, 양수인(양도인은 본인 방문 필수) * 구비서류 제출 및 전매동의신청서·동의서 등 작성 * 구비서류 : 하단 구비서류 참조(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④ LH 전매동의 승인	④ LH 주택판매부	* 사업주체 → LH : 전매동의 신청접수 * LH 서류 심사 후 전매동의서 발급 및 사업주체 수령 * LH전매동의 승인(약 3주 소요)
⑤ 권리의무 승계 및 분양계약서 불출	⑤ 견본주택 방문(2차)	* 통보 및 불출기간 : ③(권리의무 승계)일정 이후 약 1개월 이상 소요 * 수령자 : 양도인, 양수인 2명 각 신분증 지참

### ◆ 부부공동명의 변경 신청 일정 안내

장소	일시	문의
중흥S-클래스 힐더포레 견본주택 (구리시 동구릉로 3)	2026년 3월 12일(목) ~ 3월 15일(일) 10:00 ~ 17:00 까지 (점심시간 : 12시 ~ 13시)	<b>1660 - 0999</b> 부부공동명의 진행 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콜센터 운영시간: 평일 10:00~17:00

※ 부부공동명의를 희망하는 계약자 경우, 지정된 기간에 공동명의 미 진행시 중도금 대출 진행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부공동명의 후 재증여 및 취소 불가, 중도금 대출자서 시 부부모두 참석 필수(1명 대리 불가)

### ◆ 부부공동명의 변경 신청 시 구비서류

※ 해당서류는 홈페이지(<https://hf-scbs.com>)에서 확인가능

양도인(본인)		양수인(배우자)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분증, 인감도장</li> <li>* 분양계약서(아파트, 발코니확장 등 일체)</li> <li>* 검인 완료된 증여계약서(원본)</li> <li>*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2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부)</li> <li>*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li> <li>* 주민등록등본 2부(주민등록번호 별표 불가)</li> </ul>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2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부)</li> <li>* 주민등록등본 2부(주민등록번호 별표 불가)</li> <li>* 신분증, 인감도장</li> <li>*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인은 계약자 본인이 꼭 방문하여야 함</li> <li>* 양도인이 양수인 대리러 오는 경우는 위의 전체 서류와 양수인(배우자)의 인감증명서 1통 추가로 첨부(용도 : 위임용)</li> <li>*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위임이 불가하며 본인 접수 및 본인 방문 필요</li> <li>* 위 기재된 서류 미비 시 전매동의 신청서 및 동의서 접수가 불가하므로 상기 기재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참 후 방문</li> <li>* 분양계약서는 견본주택에 제출하게 되며 LH 전매동의서 발급 후 재방문 시 불출</li> <li>* 부부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의 변경 불가</li> <li>* 계약서 수령 후, 증여신고(자진신고) 미 이행에 따른 불이행을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li> </ul>		